##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7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김 윤 · 정동영 · 강준현

김 현 • 박희승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 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 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 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직·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 파견사업자의 적정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하 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	
결하여야 한다.	<u>.</u>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u>&lt;후단</u>	11 이 경
<u>신설&gt;</u>	우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직ㆍ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
	자파견사업자의 적정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
	<u>다</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생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u>&lt;</u> 삭 제>
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	
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46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 4. ~ 7. (생략)
  - ⑥ (생략)

<산	제>
\ ¬	_ /\II /

제46조(과태료)	1	$\sim$	4	(현행과
같음)				

(5)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4. ~ 7.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